〈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 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u>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마스타자동차관리(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08010012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8.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05.31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1 길 6-5(반포동, 마스타빌딩) 마스타자동차관리(주)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02-590-7000 Fax: 02-535-8235 www.master.co.kr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 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1991.01.03	1991.01.03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사업자등록번호 105-81-80287 법인등록번호 110111-0740533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마스타 자동차관리(주)	마스타 자동차관리(주)	레디카 외 1 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1 길 6-5(반포동, 마스타빌딩)		
특수관계인	장은석(대표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임원)	장기봉(사내이사) 박상면(사내이사) 류관석(감사)	장은석	02-590-7000	02-535-8235		
구분	명칭(이름)	영업표지		주소		
	투투정비	투투정비서비스	서초중앙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1 길 6-5(반포동, 마스타빌딩 1 층)		
계열회사	서비스(주)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박상면	02-590-700	02-599-9559		
	법인등록번호	110111-368912	6 사업자번호	114-86-59798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레디카	_					
- 상 호	레디카 대전탄방 1 호점 시(구) + 동단위 개설호로 표기						
영업표지	⊚ready car						
간판	(은 레디카시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0,444,042	73,253,593	27,190,449	85,035,058	480,205	-8,072,302
2022년	101,321,309	83,680,477	17,640,831	90,981,048	949,946	-9,549,618
2023년	107,212,654	98,811,276	8,401,378	94,599,344	1,306,226	-8,513,596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괴러신티	시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장은석	2021.08~현재	마스타자동차관리㈜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1991.1~2021.08	마스타자동차관리㈜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_150.161	장기봉	2021.08~현재	마스타자동차관리㈜사내이사	경영지원				
가맹사업 관련 임원		2011.1~2013.06	투투정비서비스㈜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박상면	2023.11~현재	마스타자동차관리㈜사내이사	경영지원				
_	405	2024.02~현재	투투정비서비스㈜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류관석	2018.3~현재	마스타자동차관리㈜감사	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구(경)
2023년 12월 31일	4	_	6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당사	마스타자동차관리㈜	가맹사업 경영	1991.01.~현재	마스타(등록번호: 20080100121)라는 자동차서비스 브랜드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투투정비서비스㈜	가맹사업 경영	2007.05.~현재	투투정비(등록번호: 20080100122)라는 1,2 급 정비공장을 대상으로 한 정비네트웍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해당사항 없음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



Ⅱ. 가맹본부의 [레디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06년 4월 1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마스타 자동차관리(주)	레디카	장기봉	2006.04~2021.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1 길 6- 5(반포동, 마스타빌딩)
마스타 자동차관리(주)	레디카	장은석	2021.08~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1 길 6- 5(반포동, 마스타빌딩)

3. [레디카] 업종

영업표지	업종					
레디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레디카	자동차 관련	자동차 정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레디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전체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44	144	_	140	140	_	116	116	_
서울	14	14	_	14	14	_	12	12	_
부산	10	10	1	10	10	1	8	8	_
대구	16	16	1	16	16	1	14	14	_
인천	5	5	_	5	5	_	4	4	-



광주	6	6	_	6	6	ı	6	6	_
대전	6	6	_	6	6	ı	5	5	_
울산	1	1	_	1	1	1	1	1	_
세종	_	_	_	-	_	ı	-	_	_
경기	26	26	_	25	25	ı	18	18	_
강원	5	5	_	4	4	_	3	3	_
충북	2	2	_	2	2	ı	1	1	_
충남	2	2	_	2	2	ı	2	2	_
전북	4	4	_	4	4	-	4	4	_
전남	6	6	_	5	5	_	5	5	_
경북	16	16	_	16	16	_	12	12	_
경남	23	23	_	23	23	_	20	20	_
제주	2	2	_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레디카]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159	3	_	18	-	144
2022	144	-	-	4	-	140
2023	140	_	_	24	-	116

6. [레디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레디카] 외에도 [1]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1]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망	생점/직영점의	수
1 4	81,416	O H T	등록번호	ВО	2021.12.31	2022.12.31	2023.12.31
당사	마스타자 동차관리 ㈜	마스타	20080100 120	보험회사 자동차 서비스	646/-	650/-	575/-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투투정비	20080100	자동차 정비서비 스	89/-	89/-	92/-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레디카] 가맹점사업자가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말		2023년 평균 매출액					
지역	가맹점 수	매출액	면적 3.3 m²당	상한	면적 3.3 m²당	하한	면적 3.3 m² 당	비고
전체	116	11,747	266	283,022	7,472	0	0	116곳 산정
서울	12	43,727	977	283,022	7,472	0	0	12곳 산정
 부산	8	4,046	97	18,756	302	0	0	8곳 산정
대구	14	15,026	351	54,319	1,054	0	0	14곳 산정
인천	4	해당없음	-	_	_	_	-	5곳 미만
광주	6	270	5	1,382	23	0	0	6곳 산정
대전	5	6,613	134	18,966	301	0	0	5곳 산정
울산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	_	-	-	_	5곳 미만
경기	18	10,323	247	38,235	1,190	0	0	18곳 산정
강원	3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	_	_	-	_	5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	_	_	-	_	5곳 미만
전북	4	해당없음	-	_	_	-	_	5곳 미만
전남	5	7,660	225	22,096	838	0	0	5곳 산정
경북	12	10,775	231	37,830	785	0	0	12곳 산정
경남	20	1,466	37	17,359	521	0	0	20곳 산정
제주	1	해당없음	-	_	-	-	_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정비 수수료가 발생한 가맹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비수수료란 가맹사업본부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한 정비서비스에 대한 지급수수료를 말합니다. 가맹점별 당사가 추정하기 어려운 그외 정비 매출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본부의 서비스수행을 거부하거나 가맹사업본부에서 가맹점에게 정비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곳은 정비 매출액을 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 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레디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레디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6	3,958일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레디카]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그ㅂ	수단	기간		지출 비용	}	비고
구분	구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1 <u>17</u>
광고비	(비공개)	연중	21,357	21,357	_	_
판촉비	_	연중	_	_	-	

*위 금액은 당사에서 경영중인 [마스타] 외 [레디카]의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으로써 [레디카] 의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이후에 예치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어 가맹금을 별도로 예치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에 따라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연락처	마케팅부 02-3671-7332
피보험인(보험계약자)	마스타자동차관리(주)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레디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u>1,353천원(VAT포함)</u>의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차량 구입비용, 도색비용(일부 지원), 간판비용(일부 지원), BI피복(일부지원)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비 구분	형태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출동	출/정	1,353 천원	계약 체결 시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가맹비의 30%) -개점 전 서비스/운영 교육(가맹비의 30%) -개점 전 무상지원품목(가맹비의 30%) -간판 지원(일부)

- *무상지원품목 : 별첨 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조건: 가맹점 개점 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실손해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 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 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 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보험가입금액 : 1,000 만원, 보험가입 기간 : 본 계약기간+3개월)하여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비 구분	형태	금액(VAT 포함)
출동	출/정	1,353 천원(광역시/시/군)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 무상지원품목표]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상지급 외 필요수량에 대해서는 유상구입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점 신청→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실사 → 가,부 결정	점포계약의 최종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가맹점의 위치/환경, 대표자마인드에 대한	주어집니다.
	실사후 가,부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 20 세 이상일것 정비사 자격 취득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레디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내역은 마스타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2. 영업 중의 부담

<u>1) 비용부담</u>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별도)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관리비		1.가맹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각종 서비스 수수료 의 월간 총액이 1백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2. 지급 수수료 × 5%	매월 출동비 지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시 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 육비	가맹본부	· 자세한 내용은 Ⅶ-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 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여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 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당사에 가맹비의 50%(676,500원, VAT 포함)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갑"과 "을"의 잔여계약 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가맹비 100%(1,353,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본 정보공개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최초 가맹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레디카"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레디카" 또는 "전)레디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점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레디카]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2023년 [레디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당사는 2023 년 [레디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다른 가맹사업이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상표 이외의 상표나 상호로 자동차관련 서비스나 자동차관련 용역을 제공/구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당 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긴급출동서비스	타사/자체/경쟁사 브랜드로	게야케지 시으
정비서비스	서비스 금지	계약 해지 사유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별첨 1 또는 정보공개서 V-1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을**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출동 후 배터리 교체 시 공급가에 공임 10,000 원 추가 판매
- 나. 제휴사 방문 고객 정비 시 공임 10 ~ 20% 할인
- 다. 기타 이벤트 또는 비정규 할인서비스 시 사전에 설문 또는 공지를 통하여 결정진행
- 라. 자세한 내용은 당사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6일인 HG HT	가맹본부	계열회사	
긴급출동서비스 정비서비스	레디카 마스타	투투정비서비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자동차로 20분거리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이 속한 행정구역(읍/면/동)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읍/면/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행정구역(읍/면/동)은 "을"의 영업지역에서 제외 시킨다.

다만, 관할지역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출동자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근 거리로 확인된 가맹점의 출동요원에게 출동지시가 발생될 경우 출동의 신속성과 고객의 만 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약정된 관할 지역 외 지역이라도 영업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귀하의 관할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레디카], [마스타], [투투정비서비스]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서히 면동되는 겨우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90일 사이 통보) → 가맥전사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해당사항 없음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_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_



6. 계약기간,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레디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



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제 1 항 "갑"의 영업표지를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 2. 제 1 조제 2 항의 "갑"이 제공하는 피복, 명함, 명찰, 서식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3. 제 2 조제 5 항 "을"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4. 제 6 조 각 항 "을"이 영업활동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제 7 조제 2 항 임의로 점포의 실내장식,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 6. 제 8 조제 2 항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신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 7. 제 8 조제 3 항 "갑"의 정기 및 부정기 교육에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 8. 제 8 조제 4 항 "갑"의 시정요구에 "을"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 9.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유출하여 부당 이용하는 경우
- 10. 제 19 조제 2 항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거래은행, 서비스 수행, 출동 및 견인차량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갑"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11. "을"이 "갑" 및 "갑"의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 "을"이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폐업되거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말소된 경우
- 13. "을"이 정비센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상실하여 동일 장소에서 정비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14. "을"이 "갑"이 규정하는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년 2회 이상 하위 등급 평가 시
- 15. 2회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계약 갱신 시 누적 적용)
- 16. "갑"의 제휴사로부터 "을"의 서비스 문제로 "갑"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 17. "을"의 대표 또는 직원이 "갑"의 고객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 18. "갑"에게 허위보고, 수수료 부당 청구 시
- 19. "을"의 계약 불이행건(서비스거부, 출동지연, 부당요금, 과수리 오수리 등)이 발생 시
- 20. "을"이 "갑" 또는 제휴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미친 경우
- 21. 고객에게 정비수수료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 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보완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추가약정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검토 → 추가약정서(안) 작성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동의 → 수정 완료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rightarrow 양도인/양수인 면담 \rightarrow 승인 여부 통지(30 일 이내) \rightarrow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지급) \rightarrow 양수인 교육 \rightarrow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67.65만원, VAT 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지역
V-6-1) 가맹계약의 기간 에 따른 기간	국내 전 지역

경업금지 되는 업종

당사와 계약된 제휴거래사 외 타사 또는 경쟁사의 서비스를 병행 할수 없습니다. 단, 본사와 사전에 논의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합니다.

(타사/경쟁사: 애니카,하이카,프로미월드,스피드메이트 등 기타 본사에서 정한 브랜드)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레디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365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휴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지 후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 시 또는 1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레디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판촉	100% (단, 월 관리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광고 또는 판촉행사 계획안 공고(가 맹점부담액 제시)→가맹점 동의(광 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 상, 판촉: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u></u>	개별광고	_	100%	70% 이상) 및 광고 또는 판촉 참
	가맹점모집광고 만 할 경우	100%	-	여 여부 결정→광고 또는 판촉 시 행→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	개별판촉	_	100%	(광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판촉: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동의 시 전체 가맹점 적용)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제 13 조 제 1 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위약벌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 자에게 제 14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귀하로부터 발생한 12개월 "월 평균 당사의 수익" x 10% X 잔여개월수

- *영업일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당사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귀하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당사의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당사의 수익에 산정합니다.
- *당사의 수익이라 함은 로열티, 물류수익, 판매수수료 등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귀하를 통해 당사가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수익을 통칭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12 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⑥ 귀하가 제 6 조 제 3 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호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⑧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⑨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⑦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 목	세부 절 차	소요기간	소요 비용
	합계	약 54일	_
	1.해당 지역 신설 가능 여부 검토	약 1주일	
개설 문의 단계	2.상담 및 정보공개서 수령/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수령확인서 작성 가맹본부 제출	1일	없음
	1.서비스 테스트	30일	없음
서비스 테스트	2.테스트 결과 통보 (결과 불합격 시 업무 종결)	14일	없음
	1.가맹계약서 교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 전	없음
	2.가맹계약 체결	1일	없음
가맹 계약	3.영업개시확인서 제출	가맹계약 체결일	없음
심사/선정 단계	4.가맹비 수령	가맹계약 체결일	IV. 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 1. 영 업개시 이전의 부담 > 최초 가 맹금 참고
영업개시	1.가맹점 설비 완료 (간판,도색,지시사항 등)	계약체결 후 즉시	간판비용
	2.BI 품목 주문	계약체결 후 즉시	BI품목비용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 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 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 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포의 인의 객인우 ► 안이준로 가통지거 인현을 우되나 이 하 있는 보건의 사이 의 사이 의 이 사이 이 전 전에 지 경에 지 경에 가 이 하 있는 이 유럽적 이 유럽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 비용(장비, 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업의 기 행사업자가 하이 보이 기 함에 비용 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하 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하 는 점포환경개 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당하 의가 있는 서계약서 등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무당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점포환경 1 생물부터 3 년 이내에 가 생유 중에 대한 기 나 한 환수 이 내에 하다 하는 지 하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 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 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 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 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 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 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레디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워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사장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대상 교육시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규 서비스 및 시즌/이벤트 서비스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서비스 및 시즌/이벤트 서비스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규 서비스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_	_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ı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_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품목, 제조사/공급단위/거래상대방은 시장상황 및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상의 품목 중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가맹점사업자 자체조달 품목으로 당사가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가맹점 개점 시 인테리어, 설비/집기 등 일시적인 공급품목(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은 제외되었습니다.



별첨3. 재무제표(2021~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재무제표(2022~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본사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아래 빈칸에 "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가맹계약서 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수령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	취기방자치	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인)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점주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가맹계약서 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수령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	[지방자치	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인)